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63’ -
“빈곤이 아닌 가족형태만 증명하도록 바꾸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선별복지 개선’ 공약 발표

- 이재명, 선별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이중 낙인’ 과 ‘정책 소외’ 부작용 지적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의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중위소득 80%까지 단계적 확대 등 개선방안 공약

더불어민주당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 공약 63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 기준 삭제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80%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63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한부모가족 선별복지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낙인효과 또는 정책 소외를 유발하는 현행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해 한부모가족 모두가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한부모 72% 이하) 한부모가족에만 발

급하는 증명서다.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발급 대상자는 불필요하게 ‘저소득 한부모’라는 이중의 낙인을 경험할 수 있고, 발급 비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대상의 각종 정책과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작용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여성·가족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도 “한부모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왜 가난하다는 증명까지 요구하나. 가난한 사람만 한부모가족인가”라고 물으며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빈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가족형태를 증명하는 용도로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 기준을 없앨 것을 약속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라면 누구나 법률지원, 한부모 복지시설 이용, 자녀 돌봄 등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부모가족 정책 중 저소득 한부모의 소득보장 성격을 제외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는 모두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어린이집,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자에만 우선 입소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돌봄에 취약한 한부모가족이 오히려 후 순위로 밀리는 등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선대위는 이번 공약이 이 같은 정책 배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확대될 경우 한부모 자녀 약 20만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 한부모 60% 이하) 한부모가족에만 지급되고 있다. 이를 부모 1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2인가구에 적용 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지급 기준의 월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 상향이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개선에 기여하고,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한부모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에 초점이 맞춰진 선별적 복지제도다. 이 후보는 이러한 선별복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을 설립한 바 있다. 소득 수준이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모든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소확행 공약 외에도 한부모가족과 관련해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을 공약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참고자료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 (아동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증명서 발급기준)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2% 이하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중위소득 52% 이하) 〉

구 분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자녀 1인당)
기본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월 5만원
	·만 25세 ~ 34세 이하 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만 6~18세 미만 월 5만원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5세 이하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급(자녀당 10만원, ' 21.5월~) 중이며 '22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 예정

※ '22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예정(청소년한부모 기 적용 중)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

구 분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의 자녀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등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교생 교육비(실비)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입학금 연 500만원 이내
자립지원 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증명서 발급을 통한 요금감면 등 혜택(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72% 이하) 〉

구분	지 원 내 용
요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 이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80%)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등
기타지원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9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1인당 월 일정금액) ▲4대 중·중요·조선왕릉 무료입장 ▲“대학입시 기회균등 특별전형” 지원 가능 등

2. 공약 주요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기준 폐지 (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문제점: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어 발급 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 라는 이중 낙인의 우려가, 비대상자는 각종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 존재
 -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 등 우선 입소 자격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게만 부여해 한부모가족에 가장 중요한 ‘돌봄’ 영역에서 소외되는 문제 발생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는 중위소득 100% 이하, 무료 법률지원은 중위소득 125% 이하 적용 중
- 개선책: 소득보장(복지급여 등 경제적 지원) 이외 사회서비스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받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에 기반한 소득보장(복지급여) 이외에도 자녀 돌봄심리정서 안정·직업연계 교육주거·법률 지원 및 임신 미혼모의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52%(청소년한부모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 통일

- 문제점: 비현실적인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2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2%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시급 기준 월급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빈곤율 개선이 어려움
- 개선책: 모든 한부모(미혼모부조손·청소년한부모 포함) 아동양육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상향하여 통일